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11. 13.)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9
6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1
7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3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9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17
10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9
11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21
12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13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26
14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1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16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17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18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요구안	36
1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9
20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42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제정이유

-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보면, 「행정절차법」 제41조제5항에 대통령령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한 번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일목요연하게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시 편의를 제공하고,
-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여 통합·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입법예고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제7조)
- 나. 공포번호 작성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같은 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

규정」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한 번에 알기 쉽게 하여 자치법규 입법 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고령 참전수당 수령자의 수혜기간을 감안하여 수당을 인상하여 전국 최초 명예수당 지급 자치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사업 삭제(안 제7조)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된 지원사업과 같은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삭제함.
- 나. 지급기준 개정(안 제10조제2항제1호)
 - 명예수당 : 현행(월 8만원) ⇒ 개정(월 10만원)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된 지원사업과 같은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7조를 삭제하고, 고령 참전수당 수령자의 수혜기간을 감안하여 현행 월 8만원의 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위임 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함(안 13조)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8조·제11조·제15조)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제13조(사용료 반환)에서 법률의 위임없이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11조(사용허가), 제15조(사용료의 감면 등)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임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계약의 우선 대상을 확대함(안 제1조·제2조)
 -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나.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계약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삭제함(안 제8조제2항)
- 다.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요구사항 변경함(안 별지 제1호·제2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관리함에 있어서 우선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의거 추가 또는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계약의 우선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안 제1조·제2조)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계약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삭제함(안 제8조제2항)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폐지이유

- 「기초연금법」(‘14.5.20.제정)과 관련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과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 정비 사업으로 권고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중앙의 재정 건전화 정책과 병행하여 통보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근거

하여 거창군 관내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월 30,000원씩 지급하는 수당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 폐지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폐지이유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사회보험과 관련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사업군으로 분류한 중앙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폐지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중앙의 재정 건전화

정책과 병행하여 통보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일반노인 중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노인에게 월 50,000원 이하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 폐지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폐지이유

- 정부사업으로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거창군 조손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이는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 정비 사업으로 권고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조손수당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중앙의 재정 건전화

정책과 병행하여 통보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조손가정에 월 50,000원의 수당지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 폐지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5.1.20)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구체화(안 제5조제1항)
 -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제출
- 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현행)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변경)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 신설 : 조례로 위임된 민간위원 자격 및 심의회 소집 및 정족수 등
- 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조항 신설(안 제30조제5항)
 - 감경률 100분의 3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전 40일로 구체화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관련 상위법 및 법령의 조항을
표기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여 지역 문화 창달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문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
- 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지원 대상사업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제 및 축제의 개최
 - 지역문화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사업
 -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 지역 문화시설의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 활동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동
 -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 지원제외 :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 또는 영리단체, 일회성 행사 또는 사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토록 하였고 제6조에는 지원대상 사업과 제외사업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음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폐지이유

- 예술창작스튜디오의 관리 소홀 및 운영 부진으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이미 그 효력을 잃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2006년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가조면 기리 구 석강초등학교에 스튜디오를 설치 관리·운영하였으나 관리소홀 및 운영부진으로 그 효력을 잃어 폐지하는 것으로
- 폐지조례와 관련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제정이유

-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향토문화유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보존관리 및 제외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리. 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거창군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사항으로 문화유적 보호관리의 책임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기록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제정이유

-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12. 2. 17.)」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작은도서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도서관, 법인·단체 및 개인이 설립하여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안 제3조)

-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 문화활동 지원 및 지역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안 제5조)

- 지원기준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 지원범위 : 도서 및 자료구입, 가구 및 전산기기 등
비품구입,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사업 지원

라. 작은도서관 운영기준(안 제6조 ~ 제14조)

- 공간과 위치, 운영인력,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시간, 휴관일, 안전 등
- 작은도서관별로 지역주민이 1/2이상 포함된 작은도서관운영
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12. 2. 17.)」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사항으로 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보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과태료의 부과 기준(안 제3조, 별표)
 - 위반행위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안 제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위임한 과태

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보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안 제3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안 제4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음

○ 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제8조)
 -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등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함(안 제2조·제7조)
 - 자 또는 단체 ⇒ 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제8조)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사용료 기준을 마련함.
- 사회·경제·문화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사용료 경감 대상에 반영하여 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일부 조정함(안 제6조)
 - 볼링장과 탁구장 :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 나. 100분의 50 사용료 경감 대상 추가함(안 제15조)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다. 볼링장 사용료 기준 신설함(안 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 시간 조정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취약 계층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사용료 경감 대상에 반영하여 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보조금 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건전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변경하며,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소년수련활동·문화활동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 나.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변경(안 별표 2)
- 다. 사용료 감면을 변경(안 별표 3) ※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함
- 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삭제(안 제13조제3항)
 - 사고발생 시 사용자에게 대한 민·형사상 책임 전가규정 삭제
- 마. 인용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변경 및 띄어쓰기
 - 전염병 ⇒ 감염병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활동과 문화활동사업 보조금의 지원 근거와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와 사용료 감면을 변경을 통해 청소년활동 시설의 건전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개정이유

- 「민법」이 개정('13.7.01.시행)되어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함.

3. 주요내용

- 가. 개정된 「민법」에 맞게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용어 변경함(안 제2조제2항)
 -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함.
 - 「청소년기본법」 제20조·제22조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27조
 - 지득한 ⇒ 알게 된, 인 ⇒ 명, 기타 ⇒ 그 밖의, 당해 ⇒ 해당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자 ⇒ 사람,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사항 추가함(안 제9조제1항단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민법」이 개정(‘13.7.01.시행)되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요구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요구이유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재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운영실태

- 가. 시설명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내 1층
- 다. 규모 : 면적 132㎡
- 라.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 마. 위탁대상 사무
 - 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

○ 운영 :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결혼이민자 여성 취업지원, 한국어 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바. 재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년

○ 위탁기간 만료 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 결정(재 위탁법인 : 거창기독교청년회 거창YMCA)

사. 선정방법 :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자. 예산지원

○ 시설운영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시행이 필요한 행정적 지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기독교청년회에 위탁운영 되고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고 위탁운영 경험이 있는 현 수탁기관에 위탁기간을 갱신, 재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위탁대상 및 절차 등),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2조(준용),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등에 따라 위탁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제안이유

○ 환경부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의 부지 조성으로 실증화사업 후 토지는 거창군에 무상귀속되며 인공습지공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편의시설 도모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사업대상지 내 사유지 매입

3.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899	30,044			
취득	토지	가조면 수월리 680	답	307	3,469	2016	조류감시및 제거활용	이형기
		가조면 수월리 679	하천	268	3,028			이경준

	가조면 수월리 678-1	구거	453	897	기술개발 실증화사업	이경준	
	가조면 수월리 182-3	구거	817	1,617		이복금	
	가조면 수월리 182-2	답	301	3,642		김희주	
	가조면 수월리 182-4	구거	56	111		이현량	
	가조면 수월리 181-2	구거	169	335		이복전	
	가조면 수월리 182-1	답	701	8,482		이현량	
	가조면 수월리 181-1	답	516	6,243		이현량	
	가조면 수월리 180-2	전	311	2,220		오명무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환경부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의 부지조성으로 실증화사업 후 토지는 거창군에 무상 귀속되며 인공습지 공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편의시설 도모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사업대상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10.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10.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1. 12.

2. 요구이유

- 월성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운영실태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 위치 :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 개원일 : 2001. 5. 20
- 사업비 : 4,964백만원(국비 1,680, 도비 860, 군비 2,424)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시설규모

- 부 지 : 96,912㎡(29,315평, 대지 46,426㎡, 임야50,486㎡)
- 건 평 : 건축면적 1,544.04㎡, 연면적 3,945.03㎡(지하1층, 지상3층)

구분	면적(㎡)	주요 시설	비고
계	3,420.85	지하 1층, 지상3층	본관
지하	871.86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1층	1,143.54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2층	1218.7	강당, 강의실, 숙소(8실)	
3층	186.75	지도자숙소(5실)	

나. 그간 운영사항 등

- 2000. 12. 28 ~ 2003. 12. 27 : 민간 위탁
- 2003. 12. 28 ~ 2006. 12. 31 : 1차 계약 갱신
- 2007. 1. 1 ~ 2009. 12. 31 : 2차 계약 갱신
- 2010. 1. 1 ~ 2012. 12. 31 : 3차 계약 갱신
- 2013. 1. 1 ~ 2015. 12. 31 : 4차 계약 갱신

다.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근무인원(상시)	이용인원 (2014년기준)	수입 및 지출현황(천원)		
		수입(A)	지출(B)	증감(A-B)
계 : 4명 - 원 장 :1명 - 사무국장 :1명 - 팀 장 :1명 - 영 양 사 :1명	계 : 8,879명 - 초등학교 : 878명 - 중고등학교 : 7,380명 - 대학교 : 0명 - 일반 : 621명	357,866 (수련 및 프로그램 지원비, 기타수입)	357,866 -인건비: 95,837 -시설보수: 19,568 -공공운영비: 50,147 -차입금상환: 64,394 -운영비: 127,920	0

라. 위탁사무 및 조건

- 월성청소년수련원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월성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마. 위탁기간 : 2016. 1. 1 ~ 2019. 12. 31일까지 4년간

- 위탁기간 만료 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 선정방법 : (사)흥사단의 위탁계약갱신 신청서 접수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아. 예산지원

- 월성청소년수련원 시설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결정 사항 지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동의안은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기간이 2015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수련시설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